

검 토 보 고

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○ 동 조례안은 1998년 5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○ 「공무원여비규정」(대통령령 제15,680호, '98. 2. 24)이 제정되어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준용대상을 새로운 「공무원여비규정」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.(안제3조)
-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내용(제4조)을 삭제함.

□ 검토의견

○ 동 조례안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제정으로 종전의 파주시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기준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여비지급 준용대상을 새로운 「공무원여비규정」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